

치 료 감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 별표에 규정된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이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이에 출석수당을 ‘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’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 <개정 2026.00.00>

	대상	금액
출석수당(1일)	공무원인 위원 중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출석하는 자, 공무원이 아닌 위원, 자문위원, <u>직원 중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출석하는 자</u>	<u>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</u> <u>단가 상당액</u>
여비	공무원이 아닌 위원, 자문위원	차관인 국가공무원의 여비상당액